

# 「구미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9월 2일

나. 발 의 자: 추은희 · 김재우 의원 (2인)

다. 찬 성 자: 강승수, 김영길, 김영태, 신용하, 이상호,  
이정희 의원(6인)

라. 회부일자: 2025년 9월 2일

마. 상정일자: 2025년 9월 11일

제2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문화환경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추 은 희 의원

#### 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의 역사적 · 산업적 ·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전과 전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 ·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## 다. 주요내용

- 책무(안 제4조)
- 위원회 설치 및 기능(안 제5조)
- 향토무형유산 지정 및 해제(안 제6조 ~ 제7조)
- 전수인·전수단체의 인정 및 해제(안 제8조~제12조)
- 신고사항(안 제13조)
- 행정명령(안 제14조)
- 향토무형유산 보전·전승활동(안 제15조)
- 향토무형유산 전수 장학생 선정(안 제16조)
- 향토무형유산의 공개의무 등(안 제17조)
- 경비의 보조(안 제18조)
- 실태조사 및 기록화(안 제19조)

## 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5조, 제37조, 제38조, 제39조, 제44조, 제51조
- 기 타: 조례안 예고(2025. 9. 2. ~ 9. 7.) 결과 의견없음

#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#### ○ 본 조례안은

- 「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구미시 무형유산의 보전과 전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전수인·전수단체 인정, 전승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으로,

#### ○ 검토 결과,

- 무형유산의 특성상 유형문화유산과는 별도의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므로, 독립적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, 국가 및 경상북도 지정무형유산 외에도 구미시장이 지정하는 향토무형유산을 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지역 특색을 반영한 무형유산 전승체계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전수인 및 전수단체 인정·해제 과정에서 지원 형평성 차이로 인한 민원 및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,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 기준과 세부 평가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규칙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토론요지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